

협동조합 기본법상 의무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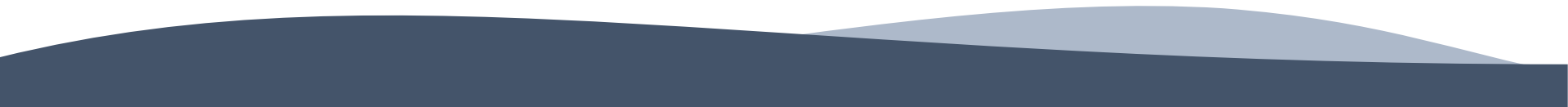
2020. 4.



기획재정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1. 사회적협동조합이란?
 2. 협동조합 기본법상 의무
 3. 의무의 위반
 4. 자주 하는 질문
- 

01

사회적협동조합이란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근거

- 협동조합 기본법에 정해진 절차와 기준에 따라 설립
- 협동조합 기본법을 위반하면 기본법에 따른 처벌 및 처분 대상

성격

- 이익 등을 구성원들에게 분배하지 않음

구분

- 협동조합은 법인 ⇒ 단체, 개인사업자와 다름

1. 사회적협동조합이란? : 비영리성

영리

비영리

영리 목적으로 설립

구성원에게 이익 분배

수익사업 수행

상법에 근거

회사

공익/비영리 목적으로 설립

구성원 이익분배 없음

비영리사업 + (수익사업)

민법/특별법

사단/재단법인 등

I. 사회적협동조합이란?: 법인격

	개인(사업자)	임의단체 (개인으로 보는 단체)	법인으로 보는 단체	법인
구성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정관과 회칙으로 운영 되는 단체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간주하는 단체	다수 사람, 법인이 출자하여 설립
설립	관할 세무서 신청/승인 → 법인번호 없음			설립인가 및 등기
해산	사업자 폐업신고로 같음			해산 및 청산
과세	개인소득세 적용		법인세법 적용	
권리/ 책임	사업채무 무한책임	은행계좌 개설불가 부동산 취득불가	대표자 개인채무와 상계할 수 없음	지분한도 유한책임

02

협동조합 기본법상 의무

기본법 제85조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인가하여야 한다.
1. 설립인가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
 2. 설립의 절차,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설립인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시행령 제19조

- 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법 제85조제2항에 따라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이하 이 조에서 “설립동의자”라 한다)가 5인 이상일 것
 2. 설립동의자는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 가운데 둘 이상의 이해관계인을 포함하여 구성될 것

기본법 제93조

-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한다.
1. 지역(시·도의 관할 구역을 말하되, 실제 생활권이 둘 이상인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생활권 전체를 말한다. 이하 이 후에서 같다) 사회의 재생, 지역 경제의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 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4.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그 밖에 공익증진에 이바지 하는 사업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 사업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 이상이어야 한다.
-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 사업의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회적협동조합 **주사업 유형** 확인하기

시행규칙 제18조(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방법)

- ① 사회적협동조합의 목적사업이 법 제93조제1항 각 호의 주 사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목적사업이 법 제93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가. 수입·지출 예산서상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을 주 사업 목적으로 지출할 것
 - 나. 사업계획서상 주 사업에 해당하는 서비스 대상인원, 시간, 횟수 등이 전체 서비스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2. 목적사업이 법 제9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계획서상 취약계층에 제공된 사회서비스 대상인원, 시간, 횟수 등이 전체 사회서비스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3. 목적사업이 법 제9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가. 취약계층에 속하는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총액이 수입·지출 예산서상 전체 인건비 총액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 나. 취약계층에 속하는 직원이 사업계획서상 전체 직원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4. 수입·지출 예산서상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예산일 것
 5. 목적사업이 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 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해당하는 비율의 합이 100분의 40 이상일 것

정관상 주 사업 40% 이상 필수 이행의무



표준정관 제60조

제60조(사업의 종류) ①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하고, 주 사업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 이상이어야 한다.

1. 000 사업
2. 000 사업
3. 000 사업

②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기타 사업으로 할 수 있다.

1. 000 사업
2. 000 사업
3.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4. 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5.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③ 조합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요건·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④ 이 조합은 주 사업의 목적 및 판단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수행할 사업유형은 '000'으로서 '000 000'으로 한다.

⑤ 주 사업 및 기타 사업은 구분하여 따로 회계처리되어야 한다.

주사업의 종류

설립인가 판단기준

사회적협동조합의 구분경리

법인세 과세사업을 파악하고자,

수익사업(과세)과 고유목적사업

(비수익사업, 비과세)이 구분된

-> 주사업과 기타사업이 구분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출필요

		제 23 (단)기		
과 목		총 합	고유목적사업	수익사업
I. 사 업 수 익		300,797,597	282,822,597	17,975,000
연 회 비		7,480,000	7,480,000	0
특 별 회 비		68,810,000	68,810,000	0
회 비		160,050,597	160,050,597	0
작 가 지 광 고 료		17,975,000		17,975,000
작 가 지 구 독 료		602,000	602,000	0
고 교 생 백 일 장 회 비		4,880,000	4,880,000	0
특 별 후 원 금		41,000,000	41,000,000	0
II. 사 업 비 용		182,051,513	182,051,513	0
1. 사 업 수 행 비 용		40,107,433	40,107,433	
고 교 생 백 일 장 비		7,293,634	7,293,634	
내 일 을 여 는 작 가 비		23,818,819	23,818,819	
기 타 사 업 비		2,193,480	2,193,480	
대 외 연 대 비		6,801,500	6,801,500	
2. 일 반 관 리 비 용		141,944,080	141,944,080	
직 원 급 여		105,037,440	105,037,440	
활 동 비		16,805,000	16,805,000	0
보 험 료		11,753,490	11,753,490	0
복 리 후 생 비		2,706,990	2,706,990	0
도 서 인 쇄 비		337,000	337,000	0
업 무 추 진 비		3,769,400	3,769,400	0
일 반 수 용 비		1,534,760	1,534,760	0
III. 사 업 이 익		118,746,084	100,771,084	17,975,000
IV. 사 업 외 수 익		8,540,602	8,540,602	
이 자 수 익		5,178,792	5,178,792	
잡 이 익		3,361,810	3,361,810	
V. 사 업 외 비 용		1,770,410	1,770,410	
이 자 비 용		1,770,410	1,770,410	
VIII. 법 인 세 차 감 전 이 익		125,516,276	107,541,276	17,975,000
IX. 법 인 세 등			0	
X. 당 기 순 이 익		125,516,276	107,541,276	17,975,000

사회적협동조합의 구분경리

주사업 달성도 측정을 위해
사업별 항목을 구분하여 관리필요

* 사회적협동조합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설립목적사업)이 반드시
비수익사업(비과세사업)이 아니기에,
사회적협동조합의 구분경리를 통해
주사업과 기타사업의 사업별 항목을
구분해서 **주사업 40% 수행여부를
확인가능**

정관 제60조 5항
"주 사업 및 기타사업은 구분하여 따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주 사업 사업비 지출 내역 (결과보고 증빙)

2018 년도		기관명	사회적협동조합		
분			사업비 (원)		
			해당 연도 예산	해당 연도 결산	
계 (A)			268,869,000	279,097,219	
주 사 업 (정관 참조)	A 사업	재료비	37,900,000	42,572,905	
		인건비	146,890,000	147,081,795	
		조합원건강지원비	2,840,000	5,508,880	
		공간유지비	36,002,000	39,142,777	
		운영관리비	15,270,000	19,640,737	
		기타운영비	900,000	214,500	
	B사업	운영관리비	2,000,000	8,152,530	
	C 사업	활동비	1,160,000	6,683,595	
	소 계(B)			242,962,000	268,997,719
기타 사업	협동조합 간 협동	연대활동비	4,207,000	3,592,220	
	홍보 및 지역사회	홍보활동비	4,560,000	590,250	
		조직활동비	9,560,000	2,746,150	
	교육 및 정보제공	기획행정비	4,920,000	2,832,380	
		교육활동비	2,660,000	338,500	
	소 계			25,907,000	10,099,500
	주 사업 비율(C=B/A)(%)			90.4%	96.4%

* 해당 양식은 별도의 구분기장이 불가능할 때 사용

참고: 법인세법상 구분경리의 의미

일반적으로,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해당됨

	비과세사업	과세사업
법인세법의 비영리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사업 비수익사업	영리사업 수익사업

비영리법인이 비영리사업(공익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비과세로 취급되므로,
과세사업과 비과세 사업을 분리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음

특히, 사회적협동조합은 <정관상 설립목적사업인 주사업 = 비과세사업>이 아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은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 수익사업과는 상관 없음

사회서비스 제공 증빙

이 용 자 현 황(방문요양)

번호	수급유형	이름	구분	등급	요양사	기타
1	수급자	강 (76)	기초	4등급	김	
2	일반	강 (89)	경감	4등급	안	
3	일반	강 (82)	일반	3등급	이	
4	수급자	강 (92)	기초	3등급	김	
5	일반	강 (94)	경감	4등급	최	
6	수급자	고 (76)	기초	4등급	김	
7	수급자	김 (88)	일반	4등급	정	
8	일반	김 (80)	일반	4등급	백	
9	일반	김 (78)	일반	4등급	정	
10	일반	김 (75)	일반	4등급	주	

취약계층 서비스 대상 목록

연번	참여 사업명	이름	취약계층 여부	취약계층 유형
(예시)	방문 목록 서비스 지원	홍길동	해당	고령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서비스 이용자 목록 혹은

취약계층 대상 여부 및 해당
유형을 기록한 자체 양식 제출

* 서비스 이용자 목록 예시(좌), 서비스 제공대상 자체양식(우)

취약계층 고용형 증빙

취약계층 고용비율 산정을 위해,
전체 고용인원 + 취약계층의 해당 사실 증빙이 모두 필요

- 1)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전체 고용인원 파악을 위함)
- 2) 취약계층별 증빙자료 (취약계층 확인 위함)

* 회계연도 말 기준 유효한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가 있는 경우, 이를 첨부하는 것으로 결과보고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확인서 발급 필수 아님 주의**)

협동조합 기본법 제28조(총회)

- ① 협동조합에 총회를 둔다.
- ② 총회는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 ③ 이사장은 총회를 소집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 ④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할 수 있다.
- ⑤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정관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총회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 총회의 의결사항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결산보고서의 승인**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협동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8. 조합원의 제명
- 8의2 탈퇴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9. 총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10.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총회 관련 필수 의무사항

④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소집하고,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5. 결산보고서의 승인

모든 협동조합은 연 1회 이상 총회 개최 필수

-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을 이사회에서 먼저 다룬 후 진행

결산보고서 및 사업결과보고서는 총회의 필수 의결사항이며,

- 해당 자료는 경영공시 때 제출해야 하는 자료로

- 경영공시 작성을 위해선

- 경영공시 입력기한* 전에 반드시 결산총회를 개최해야 함

* 경영공시 입력기한: 정관상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기본법 제28조(총회)

- ① 협동조합에 총회를 둔다.
- ② 총회는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 ③ 이사장은 총회를 소집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 ④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할 수 있다.
- ⑤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정관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총회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표준정관 제64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 ①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해당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예산이 총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이사회가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한 때에는 차기 총회에서 사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본법 제30조(총회의 의사록)

-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기본법 제97조(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② 사회적협동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등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 ③ 사회적협동조합은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법정적립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협동조합기본법상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경우 **법정적립금 적립의무**가 발생

 **결산총회**를 통해 잉여금 처리방안(법정적립금 적립 등)을 **확정한 후 적립함**

법정적립금 적립 절차

2018 회계연도
결산총회 개최

잉여금 처분 방법
의결·확정

총회 이후 일자
결산보고서에
법정적립금 반영

2019 회계연도
결산보고서 공시

- ① 2018 회계연도 미처분이익잉여금(전기 미처분 이익잉여금 + 당기순이익) 발생
- ② 결산총회를 통해 잉여금 처리방법(법정적립금/임의적립금 적립 등) 논의 및 확정
- ③ (일반적으로) **다음 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해당 처분사항 반영

**“당기순이익이 발생했더라도 당기에 법정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을 수도 있음
작년 적립하기로 결의한 금액을 올해 적립해서 공시”**

사례: 법정적립금을 적립하는 경우

재무상태표

제 1기 2019년 02월 28일 현재

회사명 : 사회적협동조합

(단위 : 원)

과목	제1(당기)금역	
	잔액	잔액
자 산		
I. 유 동 자 산		3,315,777
(1) 당 좌 자 산		2,842,170
현 보 통 예 금		109,500
선 가 세 대 금		2,578,931
(2) 재 고 자 산		56,048
상 부 가 세 대 금		97,691
II. 비 유 동 자 산		473,607
(1) 무 자 산		473,607
(2) 유 형 자 산		0
(3) 무 형 자 산		0
(4) 기 타 비 유 동 자 산		0
자 산 총 계		3,315,777
부 채		
I. 유 동 부 채		2,849,692
미 지 세 예 수 금		349,800
부 가 지 금 세 금		171,462
미 지 자 예 수 금		8,440
II. 비 유 동 부 채		2,120,000
부 채 총 계		0
자 본		2,849,692
I. 자 본		590,000
자 출 자 금		590,000
II. 자 본 잉 여 금		0
III. 자 본 조 정		0
IV. 기 타 포 괄 손 익 누 계 액		0
V. 이 익 잉 여 금		76,085
미 처 분 이 익 잉 여 금		76,085
(당 기 순 이 익)		
당기 :	76,085 원	
전기 :	0 원	
자 본 총 계		666,085
부 채 및 자 본 총 계		3,315,777

회계연도 : 2017년도			
조직 개요	조합명(연합회명)	설립연월일	총자본
		2013년 5월 29일	11,300,000원
생산자(30) 소비자() 직원(1) 자원봉사자() 후원자(5) 합계(36)명 주 사업 유형 [√]지역사업형 []위탁계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형 []위탁계출 고보형 []위탁사업형 []기타 공익종전형			
① 대차대조표			
자 산		부 채	
구 분	금 액(원)	구 분	금 액(원)
I. 유동자산	40,459,953	I. 유동부채	15,965,248
(1) 당좌자산	40,459,953	- 예수금	903,250
- 현금 및 현금성 자산	464,755	- 미지급금	2,877,000
- 보통예금	13,525,198	- 미지급비용	2,942,828
- 미수금	26,470,000	- 선수금	361,570
- 선급금	0	- 가수금	2,600
- 선급비용	0	- 회적금여출달금	8,878,000
(2) 재고자산	0	II. 비유동부채	0
- 제품	0	- 장기차입금	0
- 원재료	0	- 회적금여출달부채	0
II. 비유동자산	20,110,000	부 채 총 계	15,965,248
(1) 투자자산	20,110,000	자 본	
- 관계회사 출자금	20,110,000	I. 자본금	11,300,000
(2) 유한자산	0	- 조합원출자금	11,300,000
- 비용	0	II. 자본잉여금	0
- 시설장차	0	III. 자본조정	0
- 차입금반구	0	IV. 기타포괄손익누계액	0
(3) 무형자산	0	V. 이익잉여금	33,304,705
- 특허권	0	- 법정적립금	11,038,725
(4) 기타비유동자산	0	- 이익적립금	20,559,500
- 임차보증금	0	- 미처분잉여금	746,480
		- 전기오류수정손실	900,000
		(당기순손익)	
		당기 : 1,746,480 원	
		전기 : -8,600,000 원	
자 산 총 계	60,569,953	자 본 총 계	44,604,705
		부 채 및 자 본 총 계	60,569,953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양수(+)인 해에 적립
⇒ 결산보고서 반영

01 협동조합 기본정보	02 재정 및 성과	03 활동 상황	04 사업 결과
경 영 공 시 자 료			
회계연도	2018	협동조합명	사회적협동조합
대차대조표 (재무상태표)	대 차 대 조 표		
	자산	37,644,077원 (자산 = 부채 + 자본)	
	부채	3,519,090원	자본 34,124,987원
	자본 상세내역		
	조합원출자금	50,000,000원	법정적립금 0원
손익계산서 (운영성과표)	손 익 계 산 서		
	매출액	0원	
	영업손익	-11,701,830원 (영업손익 = 매출총손익 - 판매비와관리비)	
	영업외수익	1,238원	
	당기순손익	-11,700,592원 (당기순손익 = 법인세차감전손익 - 법인세등)	

법정적립금 미적립하는 경우

- 전기순손실 발생
(전기 당기순손익에 음수(-) 기재)
- 전기 이월 손실액 ≥ 당기순이익
- 전기 순이익 ≥ 당기순손실

기본법 제51조(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제96조 운영의 공개

-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1.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2.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3. 조합원 명부
 4. 회계장부
 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사회적협동조합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 ③ 협동조합의 채권자와 조합원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제96조의2 경영공시

-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공시(이하 이 조에서 "경영공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2. 사업결산 보고서
 3.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활동 상황
 4. 제93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4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을 포함한 사업결과 보고서

사회적협동조합은 운영의 공개 관련 의무사항 보유

“일반 협동조합도 대상에 따라 경영공시 의무 존재”

근거

협동조합 기본법 제49조의2 및 시행령 제12조

대상

- 조합원 수가 200인 이상인 협동조합
- 직전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에 적힌 출자금 납입총액이 30억원 이상인 협동조합

내용

- 정관, 규약, 규정
- 사업결산 보고서(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활동 상황(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 사업결과 보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정관상 필수 기타사업 확인 및 수행 필요”

기본법 제45조(사업)

① 협동조합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관으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업은 포함하여야 한다.

1.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2. 협동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3. 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03

의무의 위반

기본법 제119조

- ②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5조제3항, 제50조제1항·제3항,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제55조, 제58조, 제80조제3항, **제97조제1항·제3항**, 제98조, 제103조 및 제104조(제82조·제83조·제100조 또는 제11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를 한 경우
 3.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집행한 경우**

**법정적립금 미적립 및 부적절한 사용, 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운영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



기본법 제119조

③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신고·등기를 게을리한 때
2. 제49조제2항(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6조제2항(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서류비치를 게을리한 때
3. 제49조(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9조의2(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6조(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6조의2**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영의 공개를 게을리한 때
4. 감독기관 또는 총회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 또는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5.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서류 비치 의무 또는 경영공시 미이행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기본법 제112조(설립인가의 취소)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적협동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93조제1항에 따른 주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2회 이상 제11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처분을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3. 제8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설립인가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5. 제106조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인가 이후 주 사업 1년 이상 미개시/
설립인가 기준 미달(주 사업 40% 미충족)할 경우 인가 취소될 수 있음**



인가 취소 사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처분 통지

1. 근거: 협동조합 기본법 제112조(설립인가의 취소)

2. 귀 조합에 대한 점검결과 귀 조합은 사업을 계속하여 1년 이상 미수행, 사업장 부존재, 경영공시 미이행 등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협동조합 기본법 제112조에 의거 설립인가를 취소합니다.

3. 동 처분에 대하여 이의사 있을 때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더불어, 귀 조합의 설립인가가 취소됨에 따라 조합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해산 등기를 촉탁할 예정이니, 귀 조합에서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102조 부터 제10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청산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끝.

04

자주하는 질문

IV. 자주하는 질문

기본정보 변경방법

	소관부처 인가	등기	비고
정관 변경	○	✕	정관변경사항 중, 목적/명칭/주사무소 소재지/출자 1좌의 금액을 변경한 경우 등기 필요
임원 변경	✕	○	이사장 변경 시, 부처에 설립인가증 재교부 요청 필요
출자금 변경	✕	○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내에 등기(연 1회)
주소 변경	✕	○	정 관 상 소 재 지 외 의 지역으로 이전 시 정관 변경 및 인가 필요
지사무소의 설치	✕	○	정관에 따라 이사회에서 결정

기본정보 변경방법

협동조합현황 > 협동조합 설립현황

협동조합 설립현황

1 page / 1570 page

협동조합명

검색

전체 협동조합

전체 지역

지역을 선택하세요

전체 소관부처

전체 업종

전체 유형

전체 신고/수리

번호	협동조합명	소재지	수리(인가)일
15695	http://www.coop.go.kr/?ACPT_NO=20191371000SO206307&SEARCH_TYPE...		
15694	협 동 조 합 기 본 정 보		
15693	협동조합명	사회적협동조합	
15692	수리(인가)일	2019.06.24	
15691	업종구분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중이해관계자
15690	전화번호	-	대표자명
15689	품목	문화, 예술	
15688	주요사업	아동, 초·중·고 대학생 대상의 문화·예술 공연, 청소년 대상의 심리상담, 문화·예술 관련 미디어 콘텐츠 제작 사업 등	
15687			
15686			
	주소	대전광역시	

설립현황

경영공시 관리

※ 기관정보 수정

- 경영공시 자료중 협동조합명, 이사장 정보(성함), 협동조합 소재지 주소, 주사업유형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수정해드릴 수 없는 항목이오니 해당 소관부처로 연락후 수정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 소관부처 문의 : **031-697-7734**

※ 경영공시 자료

- 경영공시 자료는 지자체 혹은 소관부처 관리자의 승인을 거친 후 공개됩니다.
- 등록된 경영공시 자료가 반려된 경우, 반려사유에 따라 내용을 수정하신 후 제출하여 주십시오.

※ 경영공시 작성 클릭 시 로그인 화면으로 돌아가는 경우 조치방법

- 호환성 보기 설정 : (웹 브라우저)도구 > 호환성 보기 설정 > coop.go.kr 추가
-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설정 : (웹 브라우저)도구 > 인터넷 옵션 > 보안(탭) >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 <http://www.coop.go.kr> 추가
- 기타 문의 : **031-697-7745**

1:1 문의 게시판

경영공시 관련 FAQ 및 가이드라인 다운로드

소관부처 담당자에게 정보수정 요청

상시상담

메도소개 | 설립·운영 | 협동조합현황 | 알림마당 | **소통마당** | 교육

협동조합 찾기

협동조합 | 품목

판업종

취약계층 고용비용 확인서 발급

상시상담 게시판
협동조합 운영시 발생하는 인사·법무·회계에 대한 고민 상담

협동조합 온라인교육
협동조합 설립·운영·사회적협동 교육에 관한 학습자 중심의 교육콘텐츠 제공

협동조합 소개

- 다함께 사회적협동조합
- 한국여협동조합
- 안나실버케어 사회적협동조합
- 가가누리협동조합
- 녹색에너지 사회적협동조합
- 배곧누리 사회적협동조합
- 한국생활건강연구원협동조합

주요사례

- 협동조합온리
- 출산제과정협동조합
- 와들대학협동조합
- 에이디다사회적협동조합
- 연리지장어가죽사회적협동조합
-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 북청고교육재공동체사회적협동...

공지사항 | 자료실 | FAQ

· [공고]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2019-06-20

· [공고]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국제포럼(7.2(화))... 2019-06-17

· [공고]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2019-06-17

· [공고]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2019-06-05

· [공고] 2019년 상반기 도시재생 마을관리협... 2019-05-30

열린알림방 | 보도자료

· [연장공고] 과학기술기반 협동조합 설립... 2019-05-31

· [공고]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협의회 운영지... 2019-05-15

· [공고] 2019년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사업화... 2019-05-15

· [공고] 과학기술기반 협동조합 설립 집중과... 2019-05-15

· [안내] 비즈니스 클루 액션(BCTA) UN 포... 2019-05-09

e-store 36.5+
협동조합 판매품목 지원을 위해 사회적경제 상품 및 서비스 공급정보 제공

공공구매 상담센터
1566-5365

자원사업 열린알림방
중소기업 지원사업 등 협동조합이 참가할 수 있는 국내 다양한 지원사업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중간지원기관 대표전화
1800-2012
설립상담 / 운영지원 / 교육지원

특별 교육일정

06월

24일

· [제주] 2019 협동조합 설립학당...
· [제주] 2019 협동조합 조합원교육...
· [부산] 2019 찾아가는 협동조합...
· [서울] 2019년 서울지역 (사회적)...
· [충남] 협동조합 운영교육 및 사...
· [강원] 찾아가는 협동조합 운영...

소통마당

열린채널

상시상담

자주 묻는 질문

알림마당
New information
협동조합 관련 공지사항 등 안내 정보입니다.

소통마당 > 상시상담 > 목록

상시상담

1 page / 114 page 현재까지 총 1131 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상담구분: 구분 선택 지역선택: 지역 선택

현재진행상태: 현재진행상태 선택 현재요청신청: 현재요청신청 선택

번호	제목	상담구분	지역	원장과정 신청	현재진행상태	작성일	조회
1131	등기이사 관련	법무	서울	미신청	2차상담 진행중	2019.06.21	3
1130	2018결산에 대한 감사와의 이견	회계세무	제주도	미신청	1차상담 완료	2019.06.21	6
1129	협동조합 인수합병문의 건	법무	경북	미신청	2차상담 진행중	2019.06.20	12
1128	새 임원진 선출전의 임원임기 만료에 관한 질의	법무	충남	미신청	1차상담 진행중	2019.06.20	6
1127	사회적협동조합 잉여자금운용	법무	서울	미신청	2차상담 진행중	2019.06.19	8
1126	취업규칙 어떻게 만들고 신고해야 하나요	인사노무	경북	미신청	2차상담 진행중	2019.06.18	12
1125	협동조합 운영 및 해산 관련	법무	전북	미신청	2차상담 진행중	2019.06.17	15
1124	잉여금의 범위 질문	회계세무	서울	미신청	2차상담 완료	2019.06.17	15
1123	공공기관 임직원의 협동조합 임원 겸직	법무	강원	미신청	1차상담 완료	2019.06.17	12
1122	사회적협동조합 등기이사의 임기	법무	충남	미신청	1차상담 완료	2019.06.17	12

[처음] [이전]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마지막]

등록



회계 · 세무 분야 상시상담기관

한길회계법인

☎ 02-2135-7254, 7928
